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6. 4. 9

나. 회부일자 : '96. 4. 9

3. 제안이유

○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관련 정원을 기관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직속기관(지방공무원 교육원) : 정원 감축 1명(5급)

○ 본청 : 정원 증원 1명(4급)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 교육원 정원 1명(5급)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982명에서 981명으로 하고 본청에 1명(4급)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41명으로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